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일자 : 2011. 2. 15.  
제출자 : 안산시장

## 1. 제안사유

- 본오동 이주택지는 1998년 신길·팔곡동 도시계획도로에 편입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재산이며,
- 잔여 미분양 33필지에 대하여 2010년 1월, 11월 2차에 걸쳐 관계 부서 의견 등 조회결과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인 10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 향후 행정 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23필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으로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어 매각을 추진
-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매각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공유재산으로 계속 보존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온-비드) 사이트를 통하여 매각코자 함.

## 2. 주요내용

- 위 치 : 본오동 1148번지일원
- 사업량
  - 조성면적 : 31,125.6㎡(113필지)
  - 택지면적 : 22,439.7㎡(105필지)
  - 도로면적(주차장포함) : 8,685.9㎡(8필지)
- 이주택지 분양 현황

소재지	지목	계	분양	잔여부지	비고
본오동 1148외 104필지	대지	105필지 22,439㎡	72필지 15,380㎡	33필지 7,059㎡	

※ 건설과에서 이관시 28필지였으나, 5필지 추가 확인

○ 매각대상지(23필지, 4,887㎡ 1,480평)

구분	위치	지번		면적	도시계획용도	지목	공시지가('10) (1㎡당)	재산가액(원)	비고
		본번	부번						
계	23필지			4,887				3,213,543,600	
1	본오동	1148		225	제2종주거지역	대지	658,000	148,050,000	
2	본오동	1149	5	202.5	제2종주거지역	대지	698,000	141,345,000	
3	본오동	1150		206.9	제2종주거지역	대지	652,000	134,898,800	
4	본오동	1150	5	214.5	제2종주거지역	대지	640,000	137,280,000	
5	본오동	1150	9	214.5	제2종주거지역	대지	633,000	135,778,500	
6	본오동	1150	10	214.7	제2종주거지역	대지	633,000	135,905,100	
7	본오동	1151		192.5	제2종주거지역	대지	652,000	125,510,000	추가확인
8	본오동	1151	1	209.2	제2종주거지역	대지	652,000	136,398,400	추가확인
9	본오동	1151	2	209.5	제2종주거지역	대지	640,000	134,080,000	추가확인
10	본오동	1151	4	209.9	제2종주거지역	대지	640,000	134,336,000	
11	본오동	1151	5	211.3	제2종주거지역	대지	640,000	135,232,000	
12	본오동	1151	6	211.6	제2종주거지역	대지	640,000	135,424,000	
13	본오동	1151	7	211.2	제2종주거지역	대지	640,000	135,168,000	
14	본오동	1151	18	199.8	제2종주거지역	대지	633,000	126,473,400	추가확인
15	본오동	1152	13	216.3	제2종주거지역	대지	620,000	134,106,000	추가확인
16	본오동	1152	14	217.4	제2종주거지역	대지	620,000	134,788,000	
17	본오동	1152	15	215.3	제2종주거지역	대지	620,000	133,486,000	
18	본오동	1153	5	221.3	제2종주거지역	대지	936,000	207,136,800	
19	본오동	1153	6	211.8	제2종주거지역	대지	670,000	141,906,000	
20	본오동	1154	7	229	제2종주거지역	대지	633,000	144,957,000	
21	본오동	1154	8	230.3	제2종주거지역	대지	633,000	145,779,900	
22	본오동	1155		201.4	제2종주거지역	대지	678,000	136,549,200	
23	본오동	1155	11	211.5	제2종주거지역	대지	657,000	138,955,500	

○ 매각금액 : 2개 이상의 감정 평가사 등이 감정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 감정 평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 매각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온-비드)를 이용한 공개 입찰

###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 붙임

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 총괄표(2-1)

나. 2011년도 변경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2-2)

### 4. 단위사업 세부계획 : 붙임

가. 본오동 이주택지 분양 잔여지 매각 세부추진계획 - 회계과

### 5. 관계법규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심의회의 기능)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처분) 총괄표(2-1)

(단위 : ㎡, 천원)

구분	기 의 결			금번상정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계	건 물	4	9	8,367,000			4	9	8,367,000		
	토 지 공작물	1	1	2,250,000			1	1	2,250,000		
취득	1. 매 입										
	2. 교환으로 취 득										
	3. 기 타 취 득	4	9	8,367,000			4	9	8,367,000		
분	건 물	1	1	328,386			1	1	328,386		
	토 지 공작물				1	23	3,213,543	1	23	3,213,543	
처분	4. 매 각				1	23	3,213,543	1	23	3,213,543	
	5. 멸 실	1	1	328,386			1	1	328,386		
	6. 양 여										
사용 및 대부허가	건 물										

## 2011년도 변경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2-2)

### □ 취득 재산

(단위 : ㎡, 동,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가 정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대 상 소 유 자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해	당	없	음		

### □ 처 분 재 산

(단위 : ㎡, 동,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처 분 대 상 소 유 자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1	대지	본오동 1148외 22필지	23	3,213,543	2011.4	공유재산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매각	안산시	